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43
------------	-----

2015. 06. 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3월 25일 박마루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 4. 20. 상정·보류)
- 제26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5. 6.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마루 의원)

제안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매년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안 제5조)

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쾌적
한 단지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안
제6조)

라.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
계체계를 구축(안 제10조)

마.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 설치 가능(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주택법」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 완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조례안의 제출 배경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을 기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 박마루 의원외 16인이 발의하
여 4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입주자 지원사업(안 제7조~제13조), 민간전
문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이
루어져 있음. 이 조례안에서 입주자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내 모
든 영구임대주택으로서 LH공사가 건설·공급·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
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로 공동전기요금 전액, 관리비와 임대

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위 조례는 폐지될 예정임.

- 이 조례안의 취지는 상위법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라 함)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입주자 주거복지 증진사업(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령)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5.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6.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8.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9.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10.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내공사, 지방공사가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 부과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법 제5조).

※ 이 조례안에서 위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원사업

1. 공동전기요금 전액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 지원조례에 포함)
 2. 채무 및 파산 등에 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3.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4.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5. 아동의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6.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7. 문화·체육활동 지원
- ▶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안에서 입주자 지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안 제7조~제13조)은 삶의 질 향상 지원법령에 규정된 사업과 SH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망라하고 있음. 그러나 위 법령과 이 조례안의 차이는 법령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비용부담의 주체도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은 LH공사와 지방공사가, 나머지 입주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유지보수를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에 따를 경우,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2014년 기준) 37개 단지에 47,818호(SH공사 19개 단지 22,672호, LH공사 18개 단지 25,146호)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2015년부터 5년간 최대 1,01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¹⁾.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비용추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백만원)	
SH	LH	SH	LH	SH	LH	SH	LH	SH	LH	SH	LH
38,741		15,781		15,781		15,781		15,781		101,865	
4,674	34,067	8,104	7,677	8,104	7,677	8,104	7,677	8,104	7,677	37,090	64,775

자료: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한편,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각 사업주체(SH와 LH공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담당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밖에 서울시 예산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1) 이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전기료와 기 지원 대상(단지 및 호수)은 비용 산출에서 배제한 후 추계한 것임.

는 이 조례안에서 LH가 건설·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까지도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시장을 지원사업의 전적인 비용부담의 주체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시 재정부담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의 문제,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관련기관간 갈등으로 지원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의 책무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소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SH공사가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SH공사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및 그린홈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집 행			
	계 (100%)	국비 (50%)	지 방 비(50%)		계 (100%)	국비 (50%)	지 방 비(50%)	
			서울시	SH			서울시	SH
2012년도	246.8	123.4	15	110.4	246.8	123.4	15	110.4
2013년도	284.4	142.2	23.4	118.8	279.6	139.8	23.4	116.4
2014년도	167.74	83.87	35.98	47.89	167.74	83.87	46.12	37.75

※ 서울시 집행액은 서울시 소유인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사업비임.

- 따라서,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조례안과 같이 사업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음. 다만, 이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는 하나, 모든 지원사업을 시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담당 주체별 지원사업과 지원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소득수준, 주거여건 등을 고려하면, 아주 열악한 상황이므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정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이나, 이 조례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령에서 업무주체(LH와 SH공사)등이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화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3
----------	--------

제안일자 : 2015. 06. 2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비용분담주체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입주민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
-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
-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각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과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을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

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후단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여 안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안 제12조 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안 제11조로 한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안 제17조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여 안 제16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u>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u>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u>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u>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u>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u>지원 체계 및 재정확보 방안</u>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u></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u>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u>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u>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u></p>

제 정 안	수 정 안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6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u></p> <p><u>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u> 2. <u>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u> 3. <u>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u> 4. <u>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u> 	<p><u>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④ <u>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u></p> <p>〈삭 제〉</p> <p><u>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u> 2. <u>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u> <p>〈삭 제〉</p> <p>〈삭 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8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u>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제9조(경제역량 강화)</u> (생략)</p> <p><u>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u>(생략)</p> <p><u>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u> (생략)</p> <p><u>제12조(문화·체육활동 지원)</u>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u>사업을 지원</u>할 수 있다.</p> <p><u>제13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u> (생략)</p> <p><u>제14조(사업주체와의 협력)</u> (생략)</p> <p><u>제15조(민간자원의 활용)</u> (생략)</p> <p><u>제16조(업무의 위탁)</u> (생략)</p> <p><u>제1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u>① (생략)</p>	<p>3. (제정안과 같음)</p> <p><u>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u> ---- ----- ---<삭제>-----.</p> <p>1~2. (제정안과 같음)</p> <p><u>제8조(경제역량 강화)</u> (제정안과 같음)</p> <p><u>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u> (제정안과 같음)</p> <p><u>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u> (제정안과 같음)</p> <p><u>제11조(문화·체육활동 지원)</u>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u>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u>할 수 있다.</p> <p><u>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u>(제정안과 같음)</p> <p><u>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u>(제정안과 같음)</p> <p><u>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u> (제정안과 같음)</p> <p><u>제15조(업무의 위탁)</u> (제정안과 같음)</p> <p><u>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u>①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생략)</p>	<p>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7조(시행규칙)(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제8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문화·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